

**JBS경찰학원**

www.jbs112.co.kr

2010년 제1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 시험

형사소송법 정답 및 해설

손호상 교수

1. 정답③

③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관할구역안에서 거주하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규칙 제14조 제3항).

- ① 제33조 제1항 6호
- ② 제266조의8 제4항
- ④ 제201조의2 제8항

2. 정답④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제16조의2). 따라서 군사법원의 2심인 고등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3. 정답③ 틀린 것은 ㉠㉡㉢이다.

- ㉠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 ㉡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
 - 1. 만 70세 이상인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
-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할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

4. 정답①

- ① 피고인도 신청을 할 수 있다(제15조).
-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2. 12. 97도2463).
- ③ 제8조 제1항
- ④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으로서 위 조항에 의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대법원 2006.12.5. 자 2006초기335).

5. 정답③

③ 상고심의 판결을 담당하였던 법관이 판결정정신청을 처리하는 경우는 전심재판에 관여한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67.1.18. 66초67)

6. 정답①

- ①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260조 제1항).
- ㉠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260조 제3항).
- ㉡ 대통령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종결처리한 경우,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11.5. 자 91도68).
- ㉢ 법원은 제262조제2항제1호의 결정 또는 제264조제2항의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262조의3 제1항). 즉 임의적이다.

7. 정답②

②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고발인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감으로 잘못 알고 감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율이 농지전용행위를 한 이상 율에 대하여도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1994.5.13. 94도458).

- ①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이상, 그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대법원 2008.12.11. 2008도3656).
- ③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간통고소는 '이혼소송의 계속'과 선택적 관계에 있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고소의 유효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대법원 2007.1.25. 2006도7939).
- ④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제225조 제2항).

8. 정답①

- ① 제92조 제3항
- ②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제66조 제3항). 즉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구속기간에 산입한다.
- ③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으로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규칙 제98조).
- ④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대법원 1997. 6. 16. 자 97도1).

9. 정답③

- ③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과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제214조의2 제8항).
- ① 제214조의2 제1항
- ② 제214조의3 제1항
- ④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인정된다(제214조의2 제5항).

10. 정답②

- ② 위법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2항).
- ① 제118조
- ③ 제124조
- ④ 제113조

11. 정답②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15년+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5년+구류에 해당하는 범죄1년=21년(제249조 제1항)

12. 정답②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검사 아닌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같은 내용의 수사보고서 역시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앞서의 자백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미국 범죄수사대(CID),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위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6.1.13. 2003도 6548)

13. 정답③ 틀린 것은 ㉠㉡㉢이다

- ① 제318조의2 제1항은 탄핵의 대상에 피고인의 진술을 포함시키고 있다.
- ㉠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규칙 제77조제1항).
- ㉡ 증거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2005도2617).

㉔ 제1항에 규정한 신문은 증인의 경험, 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 등 증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 편견 또는 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 다만,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규칙 제77조제2항).

14. 정답④

④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경우 중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규정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때라 함은 무관한 자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공소제기의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또는 공소장의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 바, 소론이 주장하는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0.9.25. 90도1586).

15. 정답③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6항).

16. 정답④

이 사례의 경우 유죄의 증거는 피고인 甲의 자백밖에 없으므로 법원은 자백보강법칙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17. 정답①

①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인이 당해 등기가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할 뿐,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면 그대로 유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7. 11. 97도1180).

②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우는 증인들의 증언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2.9.28. 82도1798).

③ 유죄판결에서 밝혀야 될 이유로서의 "증거의 요지"는 필요한 증거의 제목만을 표시하여서는 안되나 그렇다고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나 하는 이유설명까지를 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 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면 된다(대법원 1971.2.23. 70도2529)

④ 살인죄에 있어서는 자수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자수하였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법원이 자수를 사유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9.5.9. 89도420).

18. 정답③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것은 ㉠㉡㉢이다

①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의하여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하므로, 살인죄에 대하여 불이익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위 조문에서 말하는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5. 98도4534).

②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불복항소한 경우에 원심이 주형에 산입될 미결구금일수를 제1심보다 줄인다 하더라도 원심의 주형이 제1심보다 가벼워져, 결국 전체적으로는 줄어든게 된다면, 원심의 형이 제1심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2.8. 93도2563).

③ 징역형의 형기가 징역 1년에서 징역 10월로 단축되었다면 벌금형의 액수가 같고 벌금형에 대한 환형유치기간이 길어졌다 하더라도 형량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11. 93도2894).

④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이 제1심과 동일한 형기이다 그 집행유예기간만을 제1심 보다 장기로 하여 형을 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형의 집행유예기간을 연장함은 형벌권의 소멸기간을 연장하여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저하하는 것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대법원 1983.10.11. 83도2034).

19. 정답④

④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단계에서 압수물의 환부에 관하여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를 허용하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그 해제된 압수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로 불복할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4.2.6. 자 84모3).

20. 정답①

약식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 자백배제의 법칙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 자백의 보강법칙이다.